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

제정 2006-11-02 주체95(내각결정 제45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외화관리사업을 개선하고 경제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 개설과 돈자리의 관리 및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는 은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 정부 및 국제기구, 기업,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금거래의 증감상태와 잔고가 기록계산되는 은행회계장부의 거래대상별 계산자리이다.

대외결제은행에는 무역은행과 그밖의 대외결제은행의 본점과 지점이, 대외결제은행돈자리관리와 관련한 사업에는 돈자리의 개설, 관리 및 리용, 이동, 페기가 포함된다.

제3조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무역은행(이아래부터는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은 대외결제은행들사이의 청산중심이다.

제4조

이 규정은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과 대외결제은행(본점, 지점포함),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두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거래기관이라 한다.), 개별적일군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상주대표기구와 외국 회사,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의 외국 기관, 회사, 외국인의 돈자리는 따로 정한 상주대표기구 돈자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른다.

제5조

대외결제은행은 돈자리의 거래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2장 돈자리의 개설

제6조

합법적인 전환성외화의 수입, 지출거래가 일어나는 거래기관은 대외결제은행(이아래부터는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거래기관은 하나의 거래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거래기관은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할 수 없다.

제7조

거래기관은 거래은행에 전환성외화원시좌돈자리와 전환성외화정기예금돈자리를 개설할수 있다.

제8조

무역회사, 외화봉사기관,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은행에 외화돈자리와 함께 내화돈자리를 개설할수 있다.

제9조

돈자리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돈자리개설과 관련한 신청문건을 거래은행에 내야 한다.

돈자리개설과 관련한 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거래대상자명, 신청근거와 같은 내용을 밝힌 다음 영업 허가증, 기업창설승인문건, 외화거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문건, 은행거래용인감증, 신용상태, 채권, 채무관계자료와 같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은행은 돈자리개설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돈자리개설승인은 예산소속에 따라 중앙예산소속인 경우 거래은행본점이 하며 지방예산소속인 경우에는 거래은행지점이 한다.

제12조

거래은행은 돈자리개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안에 돈자리를 개설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거래은행은 거래기관이 돈자리를 이동하여오는 경우 돈자리페기정형을 확인한 다음에 돈자리를 개설해주어야 한다.

제14조

돈자리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에 거래은행명과 돈자리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돈자리의 관리와 리용

제15조

돈자리의 관리와 리용은 거래기관이 한다.

제16조

돈자리관리자는 해당 거래기관의 책임자와 재정회계책임자이다.

제17조

거래기관은 현금보유한도를 넘는 화페의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8조

거래기관은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통하여서만 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거래기관은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에 등록된 돈자리를 통하여 자금거래를 하여야 하며 비법거래를 하거나 돈자리를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거래기관은 돈자리를 개설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제21조

거래기관은 돈자리거래와 관련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거래기관은 돈자리거래와 관련한 문건에 은행에 등록된 명판과 공인, 실인을 찍어야 한다.

제23조

거래기관은 은행거래용인감을 모조, 위조하거나 대리를 시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

거래기관은 소재지가 변동되거나, 통합, 분리, 해산되였을 경우 제때에 거래은행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거래기관은 돈자리의 자금류동을 정상적으로 장악분석하며 기록의 정확성을 건별로 확인한데 기초하여 경상계산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26조

거래기관은 거래은행의 입출금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안에 입출금통지와 관련한 의견을 거래은행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거래기관은 돈자리에서 잔고초과출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거래기관은 재정결산문건에 거래은행의 돈자리잔고확인을 받아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좌돈자리잔고에는 리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29조

거래기관 또는 돈자리관리자가 달라진 다음 이미 발행한 전환성외화원무현금행표글 회수하지 못하여 결제되는 경우에는 거래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제30조

거래기관은 돈자리의 류동과 잔고에 대하여 거래은행에 전화로 문의할 수 없다.

제31조

돈자리관리를 따로하지 않아 부정지출된 비용, 벌금과 같은 손실의 책임은 거래기관이 진다.

제32조

거래기관은 돈자리의 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제33조

거래은행은 돈자리의 개설과 이동, 자금결제를 책임적으로 하여 거래기관의 경영?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거래은행은 돈자리를 통하여 거래기관의 경영?동과정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거래은행의 지점은 거래은행의 본점에, 거래은행의 본점은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에 예치금돈자리를 두고 하나의 예치금돈자리를 통하여서만 은행들사이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거래은행은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에 등록된 거래기관의 돈자리에 대하여서만 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거래은행은 돈자리와 관련한 계산과 기록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38조

거래은행은 거래가 있는 조건에서 일계시문건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거래은행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없이 거래기관의 돈자리에 있는 자금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40조

거래은행은 거래기관의 돈자리상태, 돈자리거래와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돈자리의 이동 및 페기

제41조

거래기관은 국가적조치 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설한 돈자리를 이동하거나 페기할 수 있다.

돈자리를 이동하거나 폐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돈자리이동 및 페기와 관련한 신청문건을 거래은행에 내야한다.

신청문건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힌 다음 웃기관의 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거래은행은 돈자리를 이동하거나 페기하려는 거래기관의 대부, 자금청산정형을 따져본 다음 채권, 채무와 관련한 청산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거래은행은 돈자리의 이동 및 페기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거래기관은 돈자리를 이동하였거나 페기시켰을 경우 이동 또는 폐기시킨 돈자리의 번호, 거래 은행명을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

거래은행은 이등하여간 돈자리에 청구되여온 결제문건을 이동하여 각 은행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6조

거래은행은 페기된 돈자리에 청구되여온 결제문건을 되돌려 보내며 되돌려보낸 결제문건을 받은 청구기관은 없어진 거래기관의 웃기관에 제기하여 해결받아야 한다.

제47조

돈자리가 폐기된 다음 청구의 지불이 실현되였을 경우 지불된 금액은 페기된 돈자리의 거래기관이 지불해야 할 채무로 즉시 청구한 기관의 거래은행에 퇴환하여야 한다.

제48조

거래기관은 돈자리가 페기되였을 경우 리용하지 않은 은행양식을 거래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통제

제49조

거래은행의 돈자리와 관련한 감독통제사업은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거래은행의 돈자리와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0조

거래은행은 거래기관의 부당한 자금거래가 결제되지 못하도록 돈자리거래를 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거래기관의 돈자리거래를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외결제은행지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돈자리에 입출금거래가 제기되는 경우

2. 거래은행에 돈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또 개설한 다음 두개의 돈자리를 리용하는 경우와 다른 은행에 있는 돈자리를 폐기시키지 않고 이미 개설한 돈자리를 리용하는 경우

3. 거래기관이 없어졌거나 통합된 다음 돈자리의 페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림시로 개설한 돈자리의 정해진 기간이 지났을 경우

5. 재정결산문건에 거래은행의 잔고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6. 이밖에 거래기관의 돈자리거래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

거래은행은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기관의 돈자리를 페기 시킬 수 있다.

제53조

거래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기관의 합의없이 해당 돈자리에서 자금을 지출할수 있다.

1.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의 지출인 경우

2. 재판기관의 집행문에 의한 자금지출인 경우

3. 대부계약리행에 따르는 대부금과 리자의 지출인 경우

4. 수수료, 연체료, 범칙금의 지출인 경우

5. 이밖에 국가적요구에 따르는 자금지출인 경우

제54조

거래은행은 돈자리잔고초과와 관련한 출금에 대하여 거래기관에 연체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

거래은행은 거래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행하는 게시문건의 추가발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56조

거래은행은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거래기관의 계시문건을 발행할 수 있다.

제57조

거래은행은 거래기관돈자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와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긴 정도에 따라 벌금적용, 거래의 중지와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